광주선운2 A-1블록·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7.14)

1. 건설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일원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내 A-1BL, A-3BL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A-1블록, A-3블록 중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두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 **신청블록, 공급형 등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신청하고자하는 블록명, 공급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A-1블록 : 총 828호 (공공분양 492호, 행복주택 336호)**
 - **A-3블록 : 총 396호 (공공분양 249호, 행복주택 147호)**
 ※ 당첨자의 동·호배정은 블록 및 공급형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광주선운2 A-1블록·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14.)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만 6세 이하 : 2016.07.15 이후 출생(태아포함)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에서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청약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소명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07.25(화) ~08.02(수)		08.09(수)		08.10(목) ~08.17(목)		개별통보		11.14(화)		11.28(화) ~11.30(목)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A1블록

블록	주택형	공급대상	금회 공급호수 우선공급	금회 공급호수 일반공급	세대 당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주차장	합계	최대 거주기간(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시기
A1	55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8	108	55.83	23.9028	7.2574	44.6499	131.6401	6~10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25.04월 (예정)
	5A-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4	4	55.83	23.9028	7.2574	44.6499	131.6401			
	55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6	36	55.57	23.7914	7.2237	44.4419	131.0270			
	55B-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4	5	55.57	23.7914	7.2237	44.4419	131.0270			
	55C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	10	55.97	23.9627	7.2756	44.7618	131.9701			
	55D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	5	55.63	23.8171	7.2314	44.4899	131.1684			

- A3블록

블록	주택형	공급대상	금회 공급호수 우선공급	금회 공급호수 일반공급	세대 당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주차장	합계	최대 거주기간(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시기
A3	55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2	23	55.83	23.7732	9.0235	42.7940	131.4207	6~10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25.04월 (예정)
	55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3	43	55.77	23.7477	9.0137	42.7480	131.2794			
	55B-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3	3	55.77	23.7477	9.0137	42.7480	131.2794			
	55C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	4	55.89	23.7988	9.0332	42.8400	131.5620			
	55C-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1	2	55.89	23.7988	9.0332	42.8400	131.5620			

■ 임대조건

- A1블록

블록	공급형	공급대상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월임대료 (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A1	55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3,840	2,692	51,148	260,220	(+)	31,000	84,840	105,220
							(-)	45,000	8,840	353,970
	5A-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53,840	2,692	51,148	260,220	(+)	31,000	84,840	105,220
							(-)	45,000	8,840	353,970
	55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3,840	2,692	51,148	260,220	(+)	31,000	84,840	105,220
							(-)	45,000	8,840	353,970
	55B-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53,840	2,692	51,148	260,220	(+)	31,000	84,840	105,220
							(-)	45,000	8,840	353,970
	55C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3,840	2,692	51,148	260,220	(+)	31,000	84,840	105,220
							(-)	45,000	8,840	353,970
	55D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3,840	2,692	51,148	260,220	(+)	31,000	84,840	105,220
							(-)	45,000	8,840	353,970

※ **A-1블록의 경우 55B, 55C, 55D형은 55B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신청형별(55A, 55B)로 공급형 구분없이 동호수 추첨을 실시합니다.**

- **A3블록**

블록	공급형	공급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A3	55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4,040**	2,702	51,338	**261,190**	(+)	31,000	85,040	106,190
							(-)	45,000	9,040	354,940
	55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4,040**	2,702	51,338	**261,190**	(+)	31,000	85,040	106,190
							(-)	45,000	9,040	354,940
	55B-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54,040**	2,702	51,338	**261,190**	(+)	31,000	85,040	106,190
							(-)	45,000	9,040	354,940
	55C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4,040**	2,702	51,338	**261,190**	(+)	31,000	85,040	106,190
							(-)	45,000	9,040	354,940
	55C-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54,040**	2,702	51,338	**261,190**	(+)	31,000	85,040	106,190
							(-)	45,000	9,040	354,940

※ **A-3블록의 경우 55B, 55C형은 55B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신청형별(55A, 55B)로 공급형 구분없이 동호수 추첨을 실시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아래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11.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주택으로,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광주선운2 A1블록 55A형 1호(104동 101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 개시 전 별도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광주선운2 A1,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침실2-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며, 바닥재는 기능성 륨카펫으로** 시공하며 빌트인가구로 가스쿡탑(3구형)이 설치됩니다.

블록	공급형	공간 구성	
A-1	55m²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A-3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2025년 4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세대 내 중복신청, 블록별 중복신청 전부 포함)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안내**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④,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 한부모가족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신혼부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의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단, 2인가구는 110%, 맞벌이 2인가구는 130%)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2인	5,505,914 원 이하	110%	6,506,989 원 이하	130%
3인	6,718,198 원 이하	100%	8,061,838 원 이하	120%
4인	7,622,056 원 이하	100%	9,146,467 원 이하	120%
5인	8,040,492 원 이하	100%	9,648,590 원 이하	120%
6인	8,701,639 원 이하	100%	10,441,967 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맞벌이 793,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계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계약자가 될 1인을 뜻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광주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전라남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14)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입니다.**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광산구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14)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 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광주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전라남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14)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광산구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주거약자용 우선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주거약자용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PC(인터넷), 모바일 접수 '23.07.25(화) 10:00부터 ~'23.08.02(수) 16:00까지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접수 '23.07.26(수) (10:00~16:00) ※ 현장접수 장소: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23.08.09(수) 17: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온라인 서류접수 '23.08.10(목) ~ '23.08.17(목) 10:00~16:00 ▶ 등기우편 제출 '23.08.10.(목) ~ '23.08.17.(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일반우편 접수 불가) *등기우편 발송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부 <광주선운2_담당자 앞>	'23.11.14(화) 17: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ARS (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전자계약 '23.11.28(화) 10:00 ~'23.11.30(목) 16:00 ▶현장계약 '23.11.30(목) (10:00~16:00) ※ 현장계약 장소: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계약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12p. 신청방법 참조)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 신청접수, 서류제출, 현장계약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하며 본인이 신청한 블록명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접수는 "등기우편 제출" 및 "인터넷 제출"로 가능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5.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참고)**
* **우편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3.08.17)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일반우편 및 현장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우편 서류 제출 보내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부 광주선운2 담당자 앞**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며, 향후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순위 및 추첨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필수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미기재 사항 등 부적격 사항 발생 시 접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LH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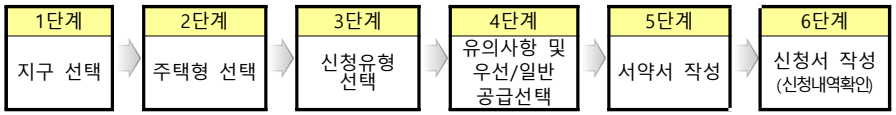
- **①등기우편(빠른등기) 접수, ②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서류제출대상자는 '23.08.09(수)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등기우편 서류접수 방법(일반우편 불가) ★우편봉투 겉면에 접수번호 필히 기재★

- **서류제출 마감일('23.08.17(목))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됩니다.**
- **빠른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부 광주선운2 담당자 앞 (우) 61947**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8.10(목) 10:00 ~ 8.17(목)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8.10(목) 10:00 ~ 8.17(목)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7.1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각 1통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세부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및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도 발급가능)	1통 (공사양식)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공급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여야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입주 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만 제출 **맞벌이 부부로 신청한 경우** → 본인과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의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민연금공단등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3. 11.14(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 '23. 11.28(화) 10:00 ~ 11.30(목) 16:00**

- 금회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그 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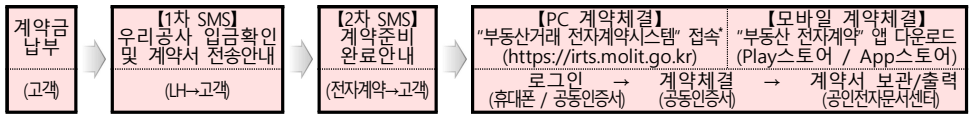
※ 당첨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계약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1차 SMS」는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중 각각 1회**(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 **발송**하고,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3.11.30(목) 10:00~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①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②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③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④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① 배우자 대리 계약시 공통서류 +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② 배우자 외의 제 3자 계약시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

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대상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table>
<tr><td></td><td>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td></tr>
<tr><td>신청 서류</td><td>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당첨자발표</td><td>•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td></tr>
</table>

<table>
<tr><td>및
계약안내</td><td>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td></tr>
<tr><td>자동차
등록
관련</td><td>
• <u>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u>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3년의 경우 3,68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지구 및
단지특성</td><td>
※ 청약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음

-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지구계획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신설되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24.03월 개교 예정임

- 지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는 지구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는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에서 직선거리 2km 이내에 광주송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서측으로 운수천, 남측으로 황룡강이 흐르고 있음

- 지구 반경 1km 이내에 선운초등학교, 선운중학교, 보문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 지구 서측 선운1지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1-244호선은 진아리채 주택조합에서 개설토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계획 및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진아리채 주택조합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도로개통이 입주 이후로 지연될 수 있음

- 지구 밖 남측으로 선운1지구와 연결되는 연결도로(폭10m)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각종 인허가 등으로 인해 도로 폭이 조정될 수 있으며, 도로개통이 입주 이후로 지연될 수 있음

-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평상시에는 바닥면이 노출됨

-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 공공분양,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 근린공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마운딩(높이10m)으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평탄화 조성은 불가함
</td></tr>
</table>

- 지구 내 가스공급시설(정압기) 및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처리시설(오수중계펌프장)이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선운2 지구는 비행 관련 소음발생 지역이며 항공기 입·출항 경로에 위치하여 항공기 및 전투기 사고 발생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므로 사전에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고, 소음관련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행안전 구역 설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절 이의 제기 할 수 없으며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 진열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건물명의 이전 및 임대 시 위 사항을 다음 명의자 및 임차인에게 인지시켜야함

■ 단지 외부여건

【A-1블록】

- 본 단지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동, 남측에는 공동주택용지(A-3BL, B-1BL)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동측 및 서측으로 공공공지 및 연결녹지가 연접하여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공공공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일반상업용지의 상업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불빛, 악취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에 공동주택(A-3BL, B-1BL), 유치원 건축공사 현장 등이 인접하여 공사차량으로 인한 매연, 불빛,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에는 도축장, 소촌공단 및 본촌공단, 주변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측 방음벽(높이15m)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단절감 및 위압감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계획 또는 예정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등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상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A-3블록】

- 본 단지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북측에는 공동주택용지(A-1BL)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남측에는 특수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동측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서측으로 연결녹지가 연접하여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일반상업용지의 상업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불빛, 악취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에 유치원, 초등학교, 진아리채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등이 인접하여 공사차량으로 인한 매연, 불빛,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에는 도축장, 소촌공단 및 본촌공단, 주변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계획 또는 예정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등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A-1블록】

(공통)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광산구청과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단지 남측 (105동, 106동 사이)에 위치하며, 원아모집 및 운영 관련사항은 추후 관계법령 및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예정임
- 본 단지는 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혼합단지로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분양, 행복)별 구분 없이 전체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일부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주차 통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지하2층 2.1m)이며, 지상으로 택배 및 이사짐 차량이 통행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음(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통합형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는 지하 총 2개층 996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3대이며, 총 999대 중 34대는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주차장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함), 386대 확장형 주차장, 35대는 임산부 주차장으로 설계됨 (원활한 차량교통체계를 위해 주차장이 동에서 다소 떨어져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임산부, 확장형, 경차, 장애인 주차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여건상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 설치되며 단지 주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 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상가 주변 지상주차장(3대)는 상가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진출입 차단기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음

- 단지 주출입구 회차로에는 어린이, 방문객 승하차장이 위치하고 있음
- 101,104,105,106동은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차로와 인접하여 차량 이동시 매연발생, 차량라이트로 눈부심이 있을 수 있음
- 101동 1층 필로티에는 키즈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가 총 3곳 (북서측, 중앙,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어 놀이터에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후면 및 105,106동 전면에는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여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 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민운동시설,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등)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장난감놀이방, 방과후교실, 공동육아방 등) 및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청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 동 번호, BI(Brand Identity)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설설치 여부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절창고는 각 동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내부 시설물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계절창고는 단지여건상 지하에 동별 세대수비율과 관계없이 설치되므로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의 계절창고를 사용하지 못 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필로티,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3블록】

(공통)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광산구청과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단지 중앙부(302동, 304동 사이)에 위치하며, 원아모집 및 운영 관련사항은 추후 관계법령 및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예정임
- 본 단지는 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혼합단지로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분양, 행복)별 구분 없이 전체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주차 통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지하2층 2.1m)이며, 지상으로 택배 및 이사짐 차량이 통행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 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음(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통합형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는 지하 총 2개층 479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1대이며, 총 480대 중 17대는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주차장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함), 165대 확장형 주차장, 17대는 임산부 주차장으로 설계됨 (원활한 차량교통체계를 위해 주차장이 동에서 다소 떨어져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임산부, 확장형, 경차, 장애인 주차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는 1개소만 설치되며 단지 주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 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상가 주변 지상주차장(1대)는 상가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진출입 차단기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음

- 단지 주출입구 회차로에는 어린이, 방문객 승하차장이 위치하고 있음
- 301,302,305동은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차로와 인접하여 차량 이동시 매연발생, 차량라이트로 눈부심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중앙에는 어린이집(어린이 놀이터)이 위치하고 있으며, 놀이터에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305동 후면에는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여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 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주민카페, 아기쉼터, 공동육아방, 방과후돌봄, 실내놀이터, 피트니트센터, GX룸, 선큰광장 등)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 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

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실내놀이터, 방과후돌봄, 공동육아방 등) 및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청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 동 번호, BI(Brand Identity)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설설치 여부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절창고는 각 동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내부 시설물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계절창고는 단지여건상 지하에 동별 세대수비율과 관계없이 설치되므로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의 계절창고를 사용하지 못 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필로티,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축분야)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아파트 창호 외부에 투시형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난간대 높이에 따라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 동별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소방용 자동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자동폐쇄장치 설치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토목/조경분야)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 분리수거장)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분진, 해충,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 불가함
-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 형태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에 인접하여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시설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울타리 및 담장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전후면 조경 식재 공간에 소방 안전매트 전개구간이 설치될 경우 교목 식재가 불가하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을 따라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기계/소방분야)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휀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시설 내 냉.난방기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실외기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됨
- 동지하 피트 천장에는 배관이 노출되어 있으며 동지하 피트 트렌치에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및 옥상 인근세대는 공용 배기팬 작동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전기/통신분야)
【A-1블록】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지하 1층의 103동 중앙에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12대, 106동 후면에 완속충전기 12대와 지하 2층의 103동 중앙에 완속충전기 13대, 106동 후면에 완속충전기 12대 설치예정이며 위치와 수량은 현장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단, 105동은 전기충전기 사용에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천장 공기유입은 에어컨(냉방장치)이 아닌 환기팬에 의한 것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기가 104동, 105동, 106동의 지붕층과 지하주차장 지하1층 휀룸#1, 휀룸#7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설치위치 : 106동, 어린이놀이터 인근)
–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 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각동 1층 출입구 우편함과 같은 장소에 설치됨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이 노출되어 시공됨

【A-3블록】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은 지하1층, 지하2층의 302, 303, 304, 305동 중앙에 설치되며, 지하1층 급속 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11대, 지하2층 완속 충전기 12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와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단, 301동은 전기충전기 사용에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천장 공기유입은 에어컨(냉방장치)이 아닌 환기팬에 의한 것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기가 지하주차장 지하2층 휀룸#3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설치위치 : 301동 인근)
-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 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각동 1층 출입구 우편함과 같은 장소에 설치됨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이 노출되어 시공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공통)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개별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훼손 및 파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고 일부 하자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반침가구, 강화합판마루, 조명기구, 월패드,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팸플릿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및 주방에서 관리 방법에 따라 생활 하수 냄새가 발생 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이의제기 할 수 없음

(건축분야)

-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벽지(도배)는 봉투바름(테두리바름)으로 시공되어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세대 반자 높이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함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있음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타일은 줄눈 사춤을 시공하지 않음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음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TV, 벽걸이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아트월 부위는 경량벽체로 별도 보강 하여 경량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주방가구 및 아일랜드 식탁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기계/소방분야)

- 실외기실에는 소방법에 의거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윗층과 아래층에 지그재그로 설치되며 설치부위 양쪽에 시설물을 놓으면 소방법에 저촉됨(최상층부터 2층 하부까지 설치되고 하부층이 필로티인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됨)
-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가스쿡탑 주위에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 설치 예정임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서 가스 보일러가 설치됨. 가스 보일러 가동시 소음이 발

생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발코니 노출배관은 시공오차에 의해 수직, 수평도가 일부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 (기능상의 문제는 없음)
- 세대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고 천장 내에는 윗층 세대 배관이 설치되며 사용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수압은 수도계량기 전단에 2.5Kg/㎠의 감압변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 보일러 허용내압 3.2Kg/㎠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압이 다소 낮다고 느낄 수 있음.
-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타입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실외기실 천장은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재 없이 노출 시공됨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입주 전 베이크 아웃 시행으로 환기장치 필터는 다소 오염 될 수 있음
- 주방 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 후면에 정풍량 댐퍼가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이 적용됨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
- 발코니(세탁기실, 보일러실 및 에어컨 실외기실 등)는 대용량의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출입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겨울철 실내 환기 작동시 환기유니트에 결로수가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기구의 덮개 개방시, 해당 세대와 해당세대의 아래 세대에 경보음이 울리게 됨
- 세탁실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노출 시공됨
- 55B, 55C, 55D 세탁실 발코니 천장에 실내환기 배관이 노출시공됨

(전기/통신분야)

【A-1블록】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매입 다운 라이트 등으로 설치되어 위치변경은 불가함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보일러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 주방의 창호 측면 천장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됨(단 최상층 발코니는 벽부형 설치)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연동)를 제공함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재활용품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날씨정보(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세대분전반은 현관팬트리 경량벽체에 매립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및 실외기실 조명기구와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단, 55B, 55C, 55D형 전체 세대의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
- 주차장 주, 부출입구에 설치된 출차경광등으로 인해 소음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접 세대의 경우 타 세대에 비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고, 각 동 외벽에는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103동 옥탑지붕층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AI 아파트 서비스는 SK, KT, LGU+ 중 입주자가 선택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홈 IoT" 앱을 통하여 이용 가능함(스마트폰 앱은 통신사 무관)
- AI 스피커(입주자가 선택한 사업자의 기본사양 장비) 사용 시 음성 제어를 포함한 다양한 A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타사 AI 스피커 이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서비스 종료기간 후에는 스마트홈 사업자의 요금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상 제공기간 종료 시점에 자동 해지됨)
- AI 아파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 SK, KT, LGU+ 이동통신 3사 중 스마트홈 사업자를 선택하고 입주 시 입주자가 선택한 스마트홈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함
- AI 아파트 서비스 내용은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상품 개선, 스마트홈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무상사용 제공 기간 내라도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LH 및 스마트홈 사업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청구할 수 없음
- AI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IoT 가전 연동을 위하여 세대 내 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세대 내 인터넷 및 WiFi는 통신사와 무관하며, 입주자가 선택하여 가입해야 함)
- IoT 가전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IoT 가전 연동 및 일부 서비스는 각 스마트홈 사업자의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제공됨
- AI 스피커는 공공분양세대에 한하여 무상 제공됩니다.

(전기/통신분야)

【A-3블록】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매입 다운라이트 등으로 설치되어 위치 변경은 불가함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보일러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 주방의 창호 측면 천장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됨(단 최상층 발코니는 벽부형 설치)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연동)를 제공함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재활용품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날씨정보(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세대분전반은 현관창고 경량벽체에 매립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및 실외기실 조명기구와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단, 55B, 55C형 전체세대의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
- 주차장 주출입구에 설치된 출차경광등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접 세대의 경우 타 세대에 비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고, 각 동 외벽에는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302동 지붕층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발전설비는 302동, 303동, 304동 지붕층에 설치되며(단, 301동, 305동은 제외),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AI 아파트 서비스는 SK, KT, LGU+ 중 입주자가 선택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홈 IoT" 앱을 통하여 이용 가능함(스마트폰 앱은 통신사 무관)
- AI 스피커(입주자가 선택한 사업자의 기본사양 장비) 사용 시 음성 제어를 포함한 다양한 A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타사 AI 스피커 이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서비스 종료기간 후에는 스마트홈 사업자의 요금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상 제공기간 종료 시점에 자동 해지됨)
- AI 아파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 SK, KT, LGU+ 이동통신 3사 중 스마트홈 사업자를 선택하고 입주 시 입주자가 선택한 스마트홈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함
- AI 아파트 서비스 내용은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상품 개선, 스마트홈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무상사용 제공 기간 내라도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LH 및 스마트홈 사업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청구할 수 없음
- AI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IoT 가전 연동을 위하여 세대 내 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세대 내 인터넷 및 WiFi는 통신사와 무관하며, 입주자가 선택하여 가입해야 함)
- IoT 가전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IoT 가전 연동 및 일부 서비스는 각 스마트홈 사업자의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제공됨
- AI 스피커는 공공분양세대에 한하여 무상 제공됩니다.

■ 학교 개교 현황

학교	학교명	위치
초등학교	선운초	선암동 558
중학교	선운중	선암동 580
고등학교	보문고	운수동 308

■ 개교 예정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유치원	운수동	미정	미정
초등학교	운수동, 선암동	미정	미정
특수학교	선암동	선예학교	'24.03월 예정

※ 지구 초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계획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바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임대시행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일(잔금 완납하여 열쇠를 수령하여 입주절차를 완료한 날)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기타사항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A-1블록]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환경관련 등급	조경(외부환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여부	-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금지	★
생활환경 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지역및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화재 . 소방 등급	화재 . 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A-1블록]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 공동주택성능등급 [A-3블록]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환경관련 등급	조경(외부환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여부	★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금지	★★
생활환경 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지역및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화재 . 소방 등급	화재 . 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A-3블록]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A-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건설산업(주) ㈜유탑건설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A-3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동아건설㈜ ㈜남정종합건설 ㈜바림종합건설 ㈜대지건설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되는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수압을 이용, 핸들 조작만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세면기	
주방	좌식 씽크대	의자 사용이 가능한 씽크대(물버림대)를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 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공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3.11.28.10:00 ~ 2023.11.30.16:00)

※ 계약체결기간 내 미신청시 설치불가하오니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렛 배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9층)**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7.14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